

대구광역시 달성군 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
----------	----

제출년월일 : 1999년 12월 10일

제출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지방세감면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2세대이상」(종전 5 세대이상)의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함.
- 99. 6. 29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지원 방안」 강구지시에 따라
99. 8. 23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임.

2.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9조

3. 주요골자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함(안 제11조)

-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를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함(안 제18조의5)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본문중 “5세대이상”을 “2세대이상”으로 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에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지역안에서 다시 설치한 때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

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공공 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 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 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 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 <u>대이상</u>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 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 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 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 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 한다.(단서 생략)</p> <p>1.~3.(생 략)</p> <p><신 설></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p> <p>-----</p> <p><u>2세</u> <u>대이상</u>-----</p> <p>-----</p> <p>-----</p> <p>-----</p> <p>-----</p> <p>-----</p> <p>-----</p> <p>-----</p> <p>(단서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5(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 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 장 또는 법인의 본점(사무소를 포함) 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p>

현 행	개 정 안
	<p>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p> <p>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지역 안에서 다시 설치한 때 <p>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p>

현 행	개 정 안
	<p>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p>